

<p>런 데 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여러 사람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규칙을 만든다가 이렇게 해서 관장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p> <p>○魚潤慶委員 그런데 아직 그런 규칙은 없잖아요?</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없습니다.</p> <p>○魚潤慶委員 그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네, 그렇습니다.</p> <p>○魚潤慶委員 그리고 제5항에 입관료 가로 하고 시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입관료는 일반학생들 열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입관료는 과거에 받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입이 한 7,8 억원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관료는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p> <p>○魚潤慶委員 그런데 여기는 입관료를 받겠다고만 하고 얼마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지금 입관료는 받지 않습니다.</p> <p>○魚潤慶委員 그런데 받겠다는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아닙니다. 조례개정안 본문에 제2조 사용료 징수에 보면 자료복사하고 개인연구실하고 문화교실, 이것만 있습니다.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 입관료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p> <p>○魚潤慶委員 조문에는 없는데 여기에다 왜 입관료를…….</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그것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이런 데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p> <p>○魚潤慶委員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입관료를 다시 복원해서 학생들한테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니죠?</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아닙니다. 조문</p>	<p>자체가 없습니다.</p> <p>○魚潤慶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p> <p>○委員長代理 張精一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제출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의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特別市教育監이 제출한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사용료의 징수) ①도서관장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복사료는 【별표】와 같다. 2.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000원으로 한다. 3.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p>②사용료는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 3 조(세입조치) 사용료의 징수금액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p> <p>제 4 조(사용시간)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p>
--	---

<p>제 5 조(과태료부과) ①도서관장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 6 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 및 자료 등을 분실·오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교실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p> <p>○委員長代理 張精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의 教育監에 대한 질의중 教育監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教育監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教育監께서 현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教育監께서는 현재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教育監 劉仁鍾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성의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준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또 서울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p> <p>먼저 林鍾化委員님께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과외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p> <p>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제 철학인 동시에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p>	<p>원회의 때마다, 또 월 초의 회의 때마다, 또 기관장 회의때도 역시 강조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政府가 흔들린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울교육만은 의연하게 나가자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서울교육은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사업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p> <p>다만, 저희들은 政府가 내놓은 그 모든 안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특수사정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제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고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p> <p>과외문제에 대해서 林鍾化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교육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기관마다 전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은 믿지를 않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종합해보면 실제 과외비는 그제 3·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를 들면 학생들의 생활비, 외식하는 것까지 전부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 20조입니다. 그래서 과외비로 한다면 그제 4조나 5조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리를 해 봅니다.</p> <p>그래서 저희들은 초점을 뒀다뒀다해도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과외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수행하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아까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대학입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가 없는 미국에 가서도 한국사람은 과외를 합니다. LA, 뉴욕이 전부 과외판입니다. 한국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나 과외가 있기 때문에 역시 구조적인 것과 동시에 민족적인, 민족성이라고 하면 좀 강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된다고는 못 보고 다만, 모든</p>
---	---